

휴학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학칙 제19조에 의한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<삭제 2009. 7. 1>

제3조 (구분 및 변경) ①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09. 7. 1, 2010. 7. 1>

1. 일반휴학 :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
2. 군입대휴학
3. 창업휴학 <신설 2014. 3. 1>
4. 학기포기휴학 : 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 사유로 인한 휴학 <신설 2016. 9. 1>
- ② 군입대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전 15일부터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 중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>
- ③ 군입대휴학 후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12. 1>
- ④ 창업교육학사운영위원회에서 창업휴학 중단 및 취소된 자는 창업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한다. <신설 2014. 3. 1>

제4조 (휴학의 제한) ①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에는 일반휴학할 수 없으며, 신·편입생은 신·편입학 첫학기에 일반휴학할 수 없다. 그리고 재직자특별전형입학자는 재학 중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해 당해 학기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9. 7. 1, 2016. 2. 1>

- ② 창업휴학은 1학년 또는 창업동아리 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휴학을 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3. 1>
- ③ 학기포기휴학은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<신설 2016. 9. 1>

제5조 (휴학기간) ① 일반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<단서조항삽입 2009. 7. 1, 단서조항삭제 2010. 7. 1>
- ③ <삭제 2009. 7. 1>
- ④ 창업휴학자의 휴학기간은 2년으로 한다. <신설 2014. 3. 1>
- ⑤ 학기포기휴학자의 휴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신설 2016. 9. 1>

제6조 (통산기간 및 연장) ①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3년으로 한다. 단, 한의예과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2. 1>

- ② 3학년에 편입학하는 학생의 휴학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2년을 넘지 못한다. <개정 2011. 12. 1>
-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산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12. 1, 2016. 9. 1>
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복무, 창업휴학, 학기포기휴학, 질병 및 유급으로 인한 휴학은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<개정 2011. 12. 1, 2016. 9. 1>
- ⑤ <삭제 2016. 9. 1>
- ⑥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예정학기 개시일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신설

2011. 12. 1>

제7조 (구비서류 및 절차) 휴학(연장)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친 후 학생 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, 2011. 12. 1>

1. 휴학원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진단서(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등)
3. 입영증명서(입영통지서, 복무확인서, 병적증명서 등)
4. 휴학연장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<신설 2011. 12. 1>
5. 창업휴학자는 제1호 휴학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학기 개시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4. 3. 1>

제8조 (휴학시기) ① 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하(동)계 방학일로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직전까지 휴학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2. 1, 2009. 7. 1>

② <삭제 2009. 7. 1>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휴학은 휴학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<신설 2009. 7. 1>

제9조 (휴학자의 성적인정) ①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군입대 휴학을 하는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해당자가 당해 학기 성적을 포기할 경우 그 학기 납입금은 이월한다.

③ <삭제 2009. 7. 1>

④ 제5조 제5항의 해당자가 성적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납입금은 이월한다. <신설 2011. 2. 10>

제10조 (휴학자의 납입금) ①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기의 하(동)계 방학일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휴학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또는 휴학연장원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하여 휴학(연장) 허가를 얻은 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. 단, 학기포기휴학 희망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2. 1, 2009. 7. 1, 2011. 12. 1, 2015. 2. 1, 2016. 9. 1>

② 현금 등록을 필한 자가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.

휴 학 일	대체 인정 금액
수업일수 1/2 까지	등록금의 전액 대체 인정
수업일수 1/2 경과 후	등록금 소멸

③ 군입대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시 전액 대체 인정한다.

④ 일반 휴학자가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일반 휴학일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1979년 이후 1983년 2월말까지의 등록금 유효시기는 중간고사 기점을 적용하며, 1983년 3월 1일 이후 1984년 8월말까지의 등록금 유효시기는 학기초부터 1개월 전을 적용한다.
3. 이 변경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이 변경 규정은 198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5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전 1984년 9월 1일부터 1989년 2월 28일까지의 등록금 유효시기는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한다.
6. 이 변경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변경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변경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13.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4.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5. (휴학생의 등록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전 휴학자의 등록금 유효시기는 제10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등록금을 납부하고 시행일 이전 매학기 수업일수의 1/2이 경과되기 전에 일반 휴학을 한 자가 시행일 이후 복학을 하는 경우에 납입금액이 휴학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16.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17.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8.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9.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.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1.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22.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제3조제3항은 시행일 이후의 휴학생부터 적용하고,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.
23.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4.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5.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6.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